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5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(5년)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- 나.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4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 의결(2023.. 11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으로 한다.

제8조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부서 개정안
<p><b>제2조의2(존속기한)</b>           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<b>2023년 12월 31일</b>까지로 한다.</p> <p><b>제8조(시행규칙)</b>  <u>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b>제2조의2(존속기한)</b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 ----- <b>2028년 12월 31일</b> --            - 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 
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# 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박지영 (☎ 3153-9652)